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소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양 권 석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이 조례안은 2009년 6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6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소방관서 신설 및 3교대 소방인력 확충을 위하여 소방직 증원과 기획·집행이 가능한 핵심실무인력 보강을 위하여 일부 직종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직급비율)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총 정원 조정 : 2,668명→ 2,781명 (증113명)

- 소방직공무원 : 1,130명→1,243명(증113명)

나. 직급별 정원 채정기준 조정

- 일반직공무원 : 6급 +1%, 8·9급 △1%

- 기능직공무원 : 7급 +1%, 10급 △1%

- 연구직·지도직공무원 : 연구관 +1%, 연구사 △1%

다. 직급별 정원조정

- 소방직공무원 : 증113명(소방령 4, 소방경 4, 소방위 15, 소방장 15,
소방교 36, 소방사 39)

- 연구직공무원 :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4. 검토의견

이 개정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3교대 실시에 따른 소방직 113명을 증원하고 정원동결 상황에서 6급이하 공무원의 직급간 정원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소방공무원 정원이 1,130명에서 1,243명으로 113명이 증가하여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총 정원이 2,668명에서 2,781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09년도 총액인건비 소요액이 1,701억원에서 1,736억원으로 35억원이 증가하지만 이는 행정안전부 총액 인건비 기준액 1,772억원 이내임.

소방직 113명의 인력운영으로는 덕산 119안전센터 신설 등에 따른 인력 증원 17명과 소방행정수요 증가 및 전면적인 3교대 실시계획에 따른 96명이 현장 활동 인력으로 배치될 예정임.

따라서 24시간 맞교대 근무로 인한 피로누적, 현장 활동 능력 저하 등은 도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임을 감안할 때 재난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소방인력의 3교대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음.

정원동결 상황에서 총 정원의 변동 없이 핵심실무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6급이하 공무원의 직급별 분포를 재조정함에 따라 일반직 7급 10년 이상, 기능직 8급 5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한 승진적체 해소와 승진기회를 제공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것으로 총액인건비 한도에 부합하고 자치 단체장의 자율성과 탄력성 있는 인력운용의 취지가 인정된다 하겠음.

앞으로, 핵심실무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6급 이하 직급별 분포 조정시 행정 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조정하며, 인력운용에 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조례 개정 후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하기 바람.

붙임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액인건비 증감내역

- '09년 총액인건비 : 1,772억원(소방직 710억 포함) *행안부 기준액
- '09년 도 예산액 : 1,701억원(소방직 668억 포함)
- ※ 총액인건비 대비 여유액 : 71억원(1,772억 - 1,701억)

□ 정원변동 내역 : 총정원 2,668명⇒2,781명(소방직+113명)

○ 증원내역(+113명)

- (소방령) : +4명(30→34), (소방경) : +4명(65→69), (소방위) : +15명(82→97),
- (소방장) : +15(157→172), (소방교) : +36(345→381), (소방사) : +39(441→480)

□ 직급조정 내역

- 일반직 : (6급) : +1%(34%→35%), (8·9급) : △1%(3%→2%)
- 기능직 : (7급) : +1%(12%→13%), (10급) : △1%(32%→31%)
- 소방직 : 변동없음

□ 추가비용 소요 : **3,446,430천원**

(단위 : 명, 천원)

직급별	당 초		변 동		증 감		비 고 (기준단가)
	정원 비율	인건비	정원 비율	인건비	정원 비율	인건비	
계	1,884	105,872,106	1,997	109,318,539	+113	+ 3,446,433	
<일반직>	100%	34,092,836	100%	34,163,964	-	+ 71,128	
(5급)	21%	13,054,992	21%	13,147,800	-	+ 92,808	- 18호봉(30,936천원)
(6급)	34%	18,918,144	35%	19,050,624	+1%	+132,480	- 18호봉(26,496천원)
(8·9급)	3%	2,119,700	2%	1,965,540	△1%	△154,160	- 12호봉(19,270천원)
<기능직>	100%	4,963,336	100%	4,997,853	-	+ 34,517	
(6급)	5%	580,756	5%	607,154	-	+ 26,398	- 18호봉(26,398천원)
(7급)	12%	1,374,960	13%	1,466,624	+1%	+ 91,664	- 15호봉(22,916천원)
(10급)	32%	3,007,620	31%	2,924,075	△1%	△ 83,545	- 10호봉(16,709천원)
<소방직>	1,130	66,815,934	1,243	70,156,722	+113	+3,340,788	- 59,129천원(1인평균) * 물건비 포함

※ 산출근거 : '09년도 예산편성지침 적용(연간인건비/1인당 × 0.5(6개월분))

지방공무원 정원비율 현황

□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정원조례 별표1)

구 분	일 반 직	기 능 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80%이상	18%이내	2%이내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정원조례 별표2)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현 비 율	7%이내	21%이내	34%이내	35%이내	3%이상
조 정 후	(변동없음)	(변동없음)	35%이내	(변동없음)	2%이상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현 비 율	5%이내	12%이내	19%이내	32%이내	32%이상
조 정 후	(변동없음)	13%이내	(변동없음)	(변동없음)	31%이상

3.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15%이내	85%이상	25%이내	76%이상

4. 소방직공무원

구 분	소방정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 율	1%이내	3%이내	6%이내	8%이내	13%이내	31%이내	38%이상

5.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5%이내	20%이내	48%이내	15%이내	10%이내	2%이상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